

제296회 정례회
2010. 12. 14(화)

심 사 보 고 서

-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 청 북 도 의 회
건설소방위원회

「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2010. 12. 14(화)
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발의일자 : 2010년 10월 5일

다. 회부일자 : 2010년 10월 8일

라. 상정일자 : 2010년 12월 7일

(제29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)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균형건설국장 송영화)

가. 제안이유

- 조직개편으로 인한 과 명칭 변경

나. 주요내용

- 재난관리과와 하천과의 통합으로 제4조제4호중 “재난관리과장”을

“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”으로, “민방위·민원개선과장”을 “기반재난
상황업무담당과장”으로 변경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길 기 응)

-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검토한바
- 조직개편으로 인한 실과 통합 및 변경된 업무에 맞게 과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
- 다만, 신·구조문 대비표 작성시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명시된 충청북도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맞게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4항 중 “재난관리과장”을 “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”으로, “민방위·민원개선과장”을 “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”으로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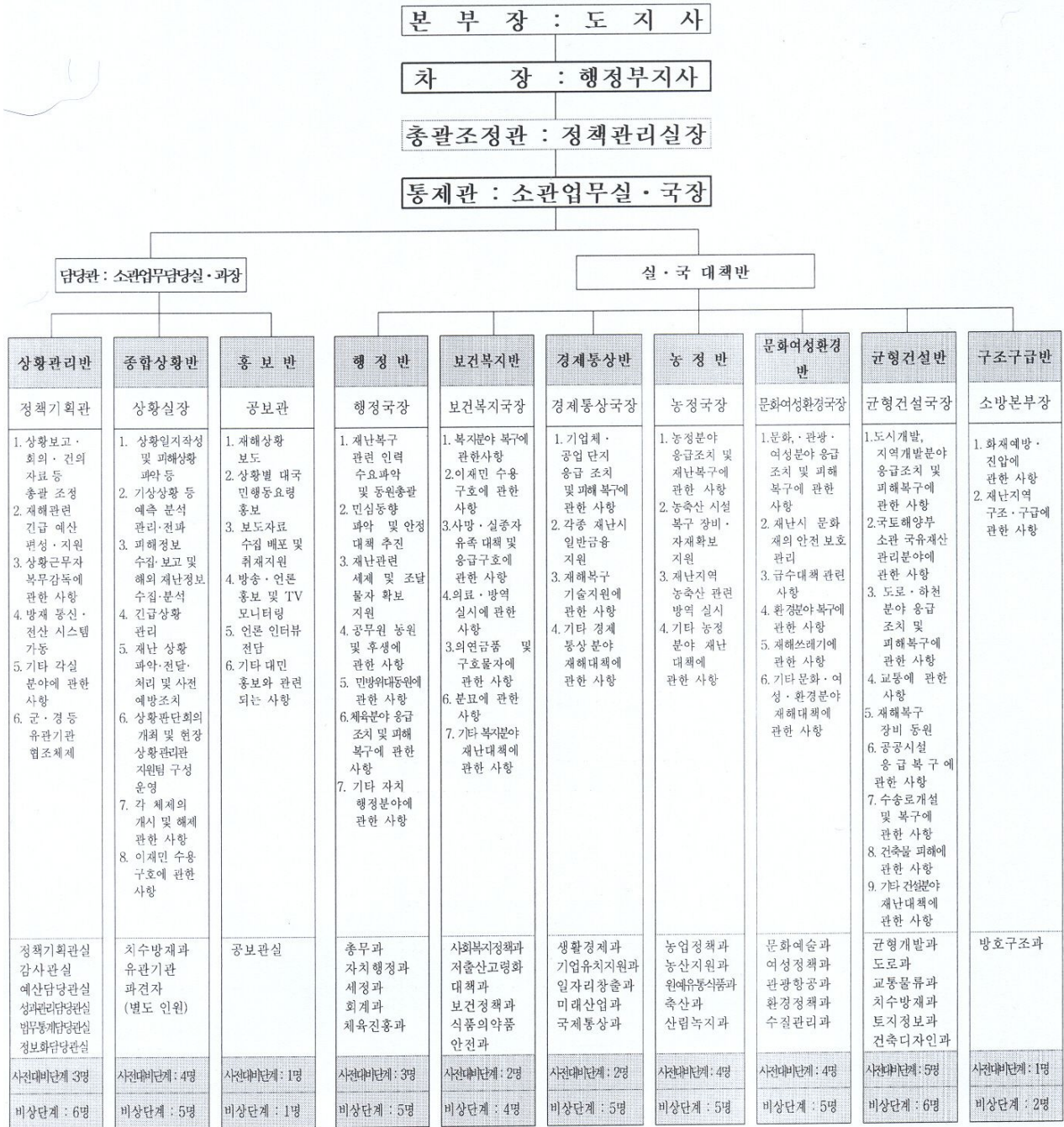
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1]

사전대비단계 및 비상단계 실무반 편성(제4조제3항 관련)



<근무방법>

1. 실·국·본부 주무 실·과·과장은 대책반장을 보좌한다.
2. 근무반원 편성은 2개조로 편성 24시간 교대로 근무한다.
(사전대비단계 29명, 비상단계 44명)
3. 실·국·본부 근무자를 재난안전대책본부와 각 실·국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, 재난 상황에 따라 일부 대책반을 소집하고 그 외에는 각 부서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.
4. 유관기관 파견자는 종합상황반에 소속되어 상황실장 통제 하에 근무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 (현재)

현 행	개 정 안
제1조 ~ 제3조(생략)	제1조~ 제3조(현행과 같음)
제4조(구성및임무)	제4조(구성및임무)
.....
④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은 재난관리과장이 되며, 종합상황실업무를 담당하고, 기반재난상황실의 장(이하 “재난상황실장”이라 한다)은 민방위·민원개선과장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.....
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.....

신 · 구조문 대비표 (검토)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구성 및 임무)	제4조(구성 및 임무)
① ~ ③ (생략)	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안전 대책본부에 두는 종합상황실의 장(이하 “종합상황실”이라 한다)은 재난관리과장이 되며, 종합상황실업무를 담당하고, 기반재난상황실의 장(이하 “재난상황실장”이라 한다)은 민방위·민원개선과장이 되며 기반재난상황실 업무를 담당한다	④재난관리업무담당과장.....
기반재난상황업무담당과장.....

관련법령 발취

□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 법률

제16조 (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) ① 해당 관할 구역안에서 재난의 예방·대비·대응·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·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시·도지사는 시·도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도대책본부”라 한다)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군·구재난안전대책본부(이하 “시·군·구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각각 둘 수 있다. 다만, 당해 재난과 관련하여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대책본부를 두는 경우에는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시·도대책본부 또는 시·군·구대책본부(이하 “지역대책본부”라 한다)를 두어야 한다.

② 지역대책본부의 본부장(이하 “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시·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된다.

③ 지역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19조 (종합상황실등의 설치·운영) ① 소방방재청장, 시·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소방서장은 재난정보의 수집·전파,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상시 종합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고, 행정자치부장관은 제3조제1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재난의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<개정 2007.1.26>

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상황실을 설치할 수 있다. 이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상황실 및 국가기반체계보호상황실과의 정보관리체계의 연계와 정보공유를 위하여 협조하여야 한다<신설 2007.1.26>